보도일시: 2021. 6. 28.(월) 10:00 이후

보도참고자료

제목: 고용노동부,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. 끝.

고용노동부 대변인
(044-202-7779)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

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(☎ 044-202-7927)

□ **2021년 7월 1일**부터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**도 **고용보험에 가입**이 가능합니다.

○ **고용보험 적용 대상**이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**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**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**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※ **7.1 적용직종**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대출 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 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 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 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

1. 적용범위		
적용대상		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
주요 적용제외		-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(22.1월부터 합산 가능) - 만65세 이상(단,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)
2. 보험료 징수		
보험료율		- 실업급여 1.4%(특고 0.7%, 사업주 0.7%)
수급요건	기여요건	-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	이직사유	- 비자발적 이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)
3. 구직급여 지급		
지급수준		-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	- 120일~270일
소득활동 인정		-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	
기여요건		-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	-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	-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<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>

□ **추진배경** :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"전국민 고용보험" 추진
□ **주요내용** :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
□ **시행일** : 2021년 7월 1일

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3, 7705)

□ **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**됩니다. ('21. 1. 5. 개정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)

○ 특고 종사자가 질병·육아휴직 등 **불가피한 사유**로 **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**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.

* ❶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, ❷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❸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
○ 7. 1. 시행시 **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, 적용제외를 희망**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**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**받아야 합니다.

□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**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**하는 점을 감안하여 **한시적('21.7.1부터 1년간)으로 고위험·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**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노동조합법, 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

<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>

□ **추진배경** :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
□ **주요내용**
○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
○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
□ **시행일** : 2021년 7월 1일
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543, 7545)

□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○ **5~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**됩니다.
- 현행 : 50인 이상 적용
- **개정 : 5인 이상 적용**

□ 개정내용은 **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**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실 >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<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>

□ **추진배경** :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□ **주요내용**
○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
- '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'19.7월부터)
- '20.1월 : 50~299인
- '21.7월 : 5~49인
□ **시행일** : 2021년 7월 1일

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13)

□ **2021.11.19.부터**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**임금명세서를 교부**해야 합니다.

○ 임금명세서에는 **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**을 기재해야 합니다.

※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참조

○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
○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**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**을 **확인**할 수 있고, 임금을 둘러싼 **노사 간 분쟁**을 **예방**할 수 있습니다.

※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(4.30)

<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>

□ **추진배경** :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

□ **주요내용**

○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
○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

○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

□ **시 행 일** : 2021년 11월 19일

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
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(☎ 044-202-7350)

□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**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**의 **고용보험료 지원**이 **신설**됩니다.

○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

<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>

□ **추진배경** :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
□ **주요내용**

○ (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
□ **시행일** : 2021년 7월 1일

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1)

□ **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·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**합니다.

※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: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%(월200만원 상한) 지원

○ **기간제·파견근로자**의 경우, **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**되면,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**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**,

○ 2021년 7월 1일부터는 **기업 규모와 관계없이**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**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**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여성>출산·육아지원(예정)

<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>

□ **추진배경 :**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

□ **주요내용 :**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

□ **시행일 :** 2021년 7월 1일

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

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(☎ 044-202-7396)

□ **2021년 7월 6일**부터 개정 **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이 시행**됩니다.

○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**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**하면서도 **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**하였습니다.

구 분	개 정 내 용
노동조합 가입 자격	-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(비종사자)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
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	-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-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, 교섭대표노조 결정,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
노동조합 임원 자격	-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-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
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	-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-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(일원화)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·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
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	-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-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-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
단체협약 유효기간	-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
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	-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 >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

<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>

□ **추진배경** :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

□ **주요내용**

○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·가입 가능

○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,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(일원화)

○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(2→3년) /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

○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

□ **시행일** :2021년 7월 6일

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신설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7)

□ **2021년 11월 19일**부터,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**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가 신설**됩니다.

- ㅇ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'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'를 설치합니다.
- ㅇ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'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'를 신속하게 소집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
-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, 지원할 수 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(4.3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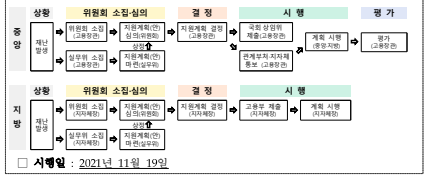
<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>

□ **정의**

ㅇ**(필수업무)**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·신체의 보호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ㅇ**(필수업무종사자)**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
□ **절차**



□ **시행일** : 2021년 11월 19일
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34)

□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**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**,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**이행강제금 한도**가 2천만원에서 **3천만원**으로 **상향**됩니다.('21.5.18. 개정「근로기준법」).

- ㅇ 개정법은 **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**됩니다.
- ㅇ '원직복직,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'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**최대 2년간 총 4회**, **각 3천만원 한도 내**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
- ㅇ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**신속한 권리구제**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(4.30.)

<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>

□ **추진배경** :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

□ **주요내용**

ㅇ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

□ **시행일** : 2021년 11월 19일
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39)

□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.

- ㅇ **사용자**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)가 직장 내 **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하고,
-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**조사**, 피해근로자 **보호**, 가해근로자 **징계 등**의 **조치의무**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- ㅇ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**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"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 보도자료('21.3.24.)

<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>

□ **추진배경** :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

□ **주요내용**

ㅇ **사용자**가 직장 내 **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**(1천만원 이하)를 부과

ㅇ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**조사**, 피해근로자 **보호**, 가해 근로자 **징계 등**의 **조치의무**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

□ **시행일** : 2021년 10월 14일

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3)

□ 2021년 10월 14일부터 **재직근로자**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**소액체당금**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('21. 4. 13. 개정「임금채권보장법」 시행)

- ㅇ 또한,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**"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"를 발급**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**소액체당금**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ㅇ 2021년 10월 14일부터 '체당금'이라는 용어가 '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약칭:대지급금)'으로 변경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"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" 보도자료('21.3.24.)

<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>

□ **추진배경** :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

□ **주요내용**

ㅇ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: (현행) 퇴직자 → (개정) 퇴직자 및 재직자

ㅇ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

- (현행)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(약 7개월 소요)
- (개정)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(약 2개월 소요)

□ **시 행 일** : 2021년 10월 14일

소방·교육(조교, 교육전문직원) 및 퇴직 공무원 등,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(☎ 044-202-7652)

□ 개정 「**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라 **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**가 확대되었습니다.

○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**직급제한을 폐지**하고, **소방·교육 및 퇴직 공무원**의 **노조가입을 허용**하였습니다.

※ 다만, 법 개정 이후에도 '지휘·감독자'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

○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개정 공무원·교원노조법 설명자료

<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>

□ **추진배경** :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

□ **주요내용**

○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

* 다만, 법 개정 이후에도 '지휘·감독자'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,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

○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(조교, 교육전문직원')의 노조가입 허용

*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장학관, 장학사, 교육연구관, 교육연구사를 말함

○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(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')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,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

* 일반직공무원, 외무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, 소방·교육공무원, 별정직공무원

□ **시 행 일** : 2021년 7월 6일

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(☎ 044-202-7656)

□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**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**해집니다.

○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**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**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○ 개정내용은 **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**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개정 공무원·교원노조법 설명자료

<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>

□ **추진배경** :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

□ **주요내용** :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

□ **시 행 일** : 2021년 7월 6일

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(☎ 044-202-7507)

□ **지자체**에 **관할지역**의 **산재 예방**을 위한 **대책**의 **수립·시행 책무**를 부여하고, 지자체 장이 자체 **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**을 **지원**하기 위한 **사업장 지도** 등 **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**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개정내용은 **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**됩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>

□ **추진배경**

○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

□ **주요내용**

○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·시행 책무를 규정

○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, 홍보,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

-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

□ **시 행 일** : 2021년 11월 19일
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5인 미만 사업장 시행

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☎ 044-202-7754)

□ 화재·폭발·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**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**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**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·시행** 됩니다.

※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

○ 따라서, **변경된 규정량'이상**으로 유해위험물질을 **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**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**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**하여 **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**하고 **심사·확인**을 받아야 합니다.

* **PSM 규정량 조정(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)**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 18종, 상향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
↳ 또한 부식성 액체(염산, 황산, 암모니아수 등)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

□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**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**)으로 **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**를 받으시면 됩니다.

<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>

명칭	소재지	연락처	관할지역
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	031-364-7510	서울, 인천, 경기,강원
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울산시 울주군 저용산업단지4길 51	052-228-5840	부산, 울산, 경남
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	054-459-1150	대구, 경북
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	061-690-1660	광주, 전남, 제주
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	063-839-5260	전북
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로 213	041-661-5841	대전, 세종, 충남
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	충북 충주시 대림로 85	043-870-5960	충북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

<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」 시행 >

□ **추진배경 :**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·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

□ **주요내용**

○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(별표 13)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(현행보다 하향(강화) 18종, 상향(완화) 18종, 현행과 동일 15종)

□ **시행일** : 2021년 7월 16일(상시근로자 5명 미만)

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6)

□ **2021년 6월 9일**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**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**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※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1조의2 신설

○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○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,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.

○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참고자료>
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>

□ **추진배경 :**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

□ **주요내용**

○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

○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

□ **시행일 :** 2021년 6월 9일

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☎ 044-202-7714)

□ **소음성 난청**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**업무상 질병 인정기준**이 **개선**됩니다.

○ 소음성 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.

○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~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, 5가지 검사요건 충족,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.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34조제3항 별표3)을 개정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.

❶ (검사주기 단축) 現 3~7일간 간격 → 改 48시간
❷ (재검사 실시요건 축소) 現 5가지 → 改 3가지
❸ (재검사 생략요건 신설) 새로운 검사방법*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
* 청성뇌간반응검사, 어음청력검사, 임피던스청력검사 등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·의결(6.1)

<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>

□ **추진배경 :**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·공정한 산재보상

□ **주요내용 :**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,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,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

□ **시행일 :** 2021년 6월 8일

「신 · 구 대비표」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/ 관계 부서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	□ 신설	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('21.7.1) ⇨ 12개 직종(보험설계사, 신용카드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강사, 방문강사, 택배기사, 가전제품배송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종사자, 방과후강사)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⇨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	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('21.7.1.)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(044-202-7927)
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	□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⇨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	□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⇨ (원칙)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⇨ (예외)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– ❶부상·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– ❷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– ❸사업주가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□ 고위험·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노동조합법, 근기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"산재보험법" 및 "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"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	산업재해보상보험법 ('21.7.1.)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13,7705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/ 관계 부서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	□ 주 최대 52시간제 ⇨ 50인 이상 적용	□ 주 최대 52시간제 ⇨ 5인 이상 적용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	근로기준법 ('21.7.1)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044-202-7545)
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	□ 신설	□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⇨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⇨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⇨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	근로기준법 ('21.11.19.)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7513)
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	□ 신설	□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	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('21.7.1.)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(044-202-7350)
기간제·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	□ 신설	□ 기간제·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여성>출산육아지원	고용보험법 ('21.7.1.)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044-202-7471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개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	□ 노동조합 가입자격 ⇨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(장)의 종사자로 한정 ⇨ 초기업단위 노조(산별노조, 지역노조, 직종별노조 등)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	□ 노동조합 가입자격 ⇨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⇨ 해당 기업의 중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쟘플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⇨ 해당 기업의 중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, 교대노조 결정,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	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('21.7.6)
	□ 노조 임원 자격 ⇨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	□ 노조 임원 자격 ⇨ 조합원·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⇨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	
	□ 노조 임원 자격 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⇨ 다만,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⇨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	□ 노조 임원 자격 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-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-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-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 시 부노로 규율	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27)
	□ 단체교섭 제도 개편 ⇨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, 다만 개별 교섭 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⇨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	□ 단체교섭 제도 개편 ⇨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⇨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·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⇨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	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(044-202-7637)
	□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⇨ 2년	□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⇨ 3년	
	□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⇨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	□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⇨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책자료>정책자료실>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	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신설	□ 신설	□ 명시 ⇨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 ⇨ "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" 구성·운영 - 고용노동부 소속, 정부·자치단체·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-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□ 재난시 ⇨ 위원회 회의 소집,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,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·시행 □ 종료시 ⇨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⇨ 우수기관·단체 포상·평가 등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	필수업무 종사자법 ('21.11.19.)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27)
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	□ 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(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	□ 제33조(이행강제금)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(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	근로기준법 ('21.11.19.)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(044-202-7534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	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□ 동일	근로기준법 ('21.10.14.)
	□ 신설	□ 사용자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
	□ 신설	□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, 피해 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	고용노동부 근록기준 정책과 (044-202-7539)
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	□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□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	□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□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	임금채권 보장법 ('21.10.14.)
	□ '체당금'이라는 용어 사용	□ '체당금'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약칭:대지급금)으로 변경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	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(044-202-7563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	□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⇨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⇨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·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⇨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	□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⇨ 일반직공무원 ⇨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(다만, 교원은 제외한다) ⇨ 별정직공무원 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책자료>개정 공무원·교원 노조법 설명자료	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'21.7.6.)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(044-202-7652)
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	□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,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,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(현직교원)만 노조 가입허용 ⇨ 예고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	□ 교원 및 "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"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☞ (참고)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책자료>개정 공무원·교원 노조법 설명자료	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('21.7.6.)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(044-202-7656)
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	□ 신설	□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⇨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 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·시행 책무를 규정 (제4조의2) ⇨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, 홍보,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(제4조의3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·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	산업안전 보건법 ('21.11.19.)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(044-202-7697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	□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(산안법 시행령 별표 10)	□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임도에 따라 조정 • **상향(완화) 18종:** 포스핀, 삼불화붕소, 염소 트리플루오르화, 일산화질소, 불소 트리염화물, 브롬화수소, 황소 트리플루오르화물, 메틸 이소시아네이트,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, 실란(Silane), 디에틸알루미늄 염화물, 이황화탄소, 염화 티오닐,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, 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, 불산, 황산, 암모니아수 • **하향(강화) 18종:** 포스겐, 시안화수소, 불소, 염소, 염화수소(무수염산), 산산화황, 암모니아, 이산화황, 브롬,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, 염화벤젠, 디클로로실란, 산화에틸렌, 수소, 이크릴로니트릴, 클로로술폰산, 삼염화인, 발연황산 □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• **농도조정:** 불산, 황산, 염산, 암모니아수 •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장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(1일 5,000 Kg → 1일 50,000 Kg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정부개정안	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(5인 이상 '21.1.16 / **5인 이만 '21.7.16**)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044-202-7754)
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	□ 신설	□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□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참고자료> 남녀고용평등법, 근로복지기본법,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	산업재해보상보험법 ('21.6.9.)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16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	□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~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□ (재검사 실시요건) 5가지 1)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)상승법,하강법,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)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게나 같을 것 4)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)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□ (재검사 생략요건) 신설	□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□ (재검사 실시요건) 3가지 - 2), 3) 생략 □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,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 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·의결 (6.1.)	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('21.6.8.)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7714)